

행정대집행 고지서

단체명 : 정선군산악협의회(실체 불명)

주소 : 불명

1. 귀하께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(가리왕산 정상) 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하며, 불법시설물은 「산지관리법」 제44조제1항 및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 대상입니다.
2. 이로 인해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2023년 5월 9일(화)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합니다.
3.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4. 또한, 위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일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,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산림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.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	가리왕산 정상 표지석	(L)365mm*(W)75mm*(H)1080mm	철거 후 원상복구

※ 위 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4월 27일

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

